

# 문헌 푸르지오 트레시엘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서류제출 안내문

- 서류제출 일정 : 특별공급 - 2023년 12월 07일(목) ~ 12월 09일(토) / 3일간 10:00 ~ 16:00  
일반공급 - 2023년 12월 14일(목) ~ 12월 17일(일) / 4일간 10:00 ~ 16:00
- 서류제출 장소 : 문헌 푸르지오 트레시엘 견본주택 (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209)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10)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.  
※ 아래 서류의 적격 부적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 
※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격 의식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은 취소됩니다.

구분	서류 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2020.12.21.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[용도 : 아파트 계약용 / 인감증명서상 인감도장 날인 필요]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(서명 날인)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본인	• 반드시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,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	○		배우자 및 세대구성원	• 반드시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,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 •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• 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세대주'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(소득 및 자산 조회용)	본인 및 세대구성원	• 견본주택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(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) •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(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) •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 될 세대원 (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) •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,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서명함
	○		주민등록표 초본 (전체 포함)	본인	• 반드시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성명, 관계, 세대원의 전입일/변동일 사유, 세대구성 사유,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
		○		배우자 및 세대구성원	•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성명/관계 등을 '전체 포함'으로 발급 • 공고일 이후 '공고일 현재 세대주'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(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• (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)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	•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'상세'로 발급 • 단독세대일 경우(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, 배우자가 사망, 이혼한 경우) 또는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), 만 19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	본인	•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10.(금)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•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
	○		국내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	배우자 및 세대원	•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
	○		전세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, 확인 가능 자료	임차주택	• 임대차계약서 • 낙찰 증빙서류 : 매각허가결정(공매), 매각결정통지서(공매) / 경 · 공매에서 채권자임이 확인 가능한 여타의 자료 ex) 경매 : 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/ 공매 : 배분계산서 등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
	○		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 서류	대상자	• 청약 시 최하중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(장애인등록증)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자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)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
	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(※ '단신부임'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)				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○		해외체류 증빙서류 (단신부임 입증서류)	본인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8항에 따라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국내기업 ·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: 파견, 출장명령서 등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, 근로 관련 서류, 취업,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
	○		출입국사실 증명서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(단신부임) ※ 청약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등본에 분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포함 ※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※ 1961.01.01 이전 출생자는 1961.01.01.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※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분 추가 제출 필요(기록대조일 : 본인 생년월일 ~ 개명 이전 일로 설정)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피부양 직계존속	•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
※ 본 안내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오류 및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